

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3. 6. 허옥희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공무원 중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공직의 안정성 저하, 인력 부족,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고성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5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청원경찰법」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2호
 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~제2조)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용어 정의는 관련 법령을 준용해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적정함.
- (안 제3조) 군수의 행정·재정 지원 의무와 안정적 직장문화 조성 책임을 규정하여 조례 실행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적정함.
- (안 제4조)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 및 조례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합함.
- (안 제5조~제6조)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조직문화 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·역량강화·심리상담·복지·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군수에게 위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.
- (안 제7조) 군수가 공공기관, 관련 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적절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군수의 역할을 행정·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재량 범위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,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